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장 소:** 백주년기념관 영빈실  
**참석 위원:** 이국헌(위원장), 이주승(서기), 권혁진(위원), 김지훈(위원), 송재현(위원),  
 위경수(위원), 최준환(위원)  
**불참 위원:** 김용선(위원)  
**첫 기 도:** 이국헌

##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 1. 개회

위원장은 교직원 당연직위원, 선거로 인해 자격을 취득한 학생대표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등의 위원들을 소개하고 총동문회 대표는 하남주 위원에서 최준환 위원으로 변경됨을 설명함.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요건을 충족하여 성원이 됨으로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위 원 장 :**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차에 이어 제3차 회의에 참석해준 위원들께 감사를 표함.

어제 재정운영위원회, 금일 오후 2시에 등록금심의위원회, 내일 오전 중 평의원회, 그리고 이사회 등에서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함을 설명함.

오늘 회의가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위해 실무책임자인 재무팀장을 초청위원으로 참석토록 제안 및 동의함.

**교직원대표1 :** 재청함.

**모든 위원들 :** 전체위원 거수함.

**위 원 장 :**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에 대해 재무팀장이 보고 하도록 요청함.

**재 무 팀 장 :** 결산서 작성 및 확정까지의 일정을 설명함. 4월10일부터 4월13일까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현재의 결산서를 확정했으며 심의 및 의결 후 제출 일정에 따라 제출하게 됨을 설명함. 결산서는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집행된 결과임을 설명했으며 등록금수입, 전입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 수입항목과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을 포함한 지출항목의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함.

주요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총자금규모
- 2)인건비현황
- 3)적립금현황
- 4)건축현황

- 5)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교육시설을 위한 건축기금적립
- 6)미사용차기이월금
- 7)결산관련 등록금 현황과 주요사업 현황
- 8)자금계산서 수입 및 지출 현황,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등 설명함.

총동문회 대표 : 전년도 보다 기부금 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질의함.

위 원 장 : 2015학년도에 특별히 발전기금을 기부한 금액이 \*억원으로 16학년도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보다 적지만 2017학년도에는 증가하도록 노력할 것을 설명함.

학생 대표 1 : 자금계산서에서 연구학생경비 예산액이 \*억 미집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예 산 팀 장 : 예산회계의 특성상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며 집행이 확정적이지 않은 연구비, 장학금 등의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음을 설명함.

학생 대표 2 : 자금계산서에서 기타교육부대수입과 기타운영비가 예산액대비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재 무 팀 장 : 우리대학에는 학교기업이 2개가 있으며 교비회계 중 기타교육부대수입과 기타운영비에 학교기업의 결산금액을 합산하여 나타내었음을 설명함.

외부 전문가 : 투자와기타자산지출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재 무 팀 장 : 사립학교법 제32조 2항에 의거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위한 기금적립을 할 수 있으며 2016학년도의 경우 법적인 한도는 27억원이지만 7억원을 임의건축기금으로 적립하였음. 또한 기부금수입액에 따라 임의기타기금 적립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적립한 것이 차액으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함.

### 3. 최종 결의

위 원 장 : 결산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를 의결할 것을 요청함.

서 기 :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의결을 제안하고 동의함.

학생 대표 3 :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가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검증되고 금일 등록금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청함.

위 원 장 : 가하다고 생각하는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표해줄 것을 요청함.

모든 위원들 : 전체위원 거수함.

위 원 장 :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선언함.

### 4. 회의 종료

위 원 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함.

끝기도 : 최준환

위원장 이 국 헌 이국헌

부위원장 김 용 선 \_\_\_\_\_

서 기 이 주 승 이주승

위 원 권 혁 진 권혁진

위 원 김 지 훈 김지훈

위 원 송 재 현 송재현

위 원 위 경 수 위경수

위 원 최 준 환 최준환